



경기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

우16304 /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963(송죽동) 4층 / 전화(031)243-5221,2 / 팩스(031)251-9770 / www.kgta.or.kr

문서번호 경기화협 제727호	선 결		지시	
시행일자 2020. 9. 3.	접 수	일자 시간	결 재 · 공 람	
		번호		
수 신 각회원 (경유)	처리과			
참 조	담당자			

제 목 운수종사자의 온라인 보수교육 적극 홍보 재요청

1.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경기도교통연수원 경교연20-100(2020.8.24.)와 관련입니다.

3. 경기도교통연수원에서는 위호와 같이 온라인 홍보 협조 요청에도 불구하고, 예약인원이 증가하지 않음에 2020년도 보수교육 수료 및 예약 현황(2020.8.28.기준)을 알려온 바, 각 회원님께서서는 산하 위수탁차주 및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줄 것을 재요청 드리며,

4. 아울러, 온라인 보수교육 추진 방법 중 PC 및 모바일 사용이 가능하나 모바일(스마트기기)을 통한 보수교육 학습시 약 5G(기가바이트)의 데이터가 소모되오니 와이파이가 아닌 데이터 이용시에는 비용이 발생 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와이파이 환경 이용 및 PC(인터넷) 사용을 권장 안내하여 주시고 교육 미이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붙임 : 1. 2020년도 보수교육 수료 및 예약 현황 1부.
 2. 2020년도 온라인 보수교육일정 1부.
 3. 업종별 교육 방법 매뉴얼 1부.
 4. 운수종사자(보수)교육 관련 행정처분 1부. 끝.

경기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
 이 사 장 고 달 원



1. 2020년도 보수교육 수료 및 예약 현황

2020.8.28 기준

조합별	기수	계획 인원	수료 인원	예약 인원		비고 (미예약자 %)
				온라인	집합	
총계		137,042	59,573	11,632	1,779	64,058(46.7%)
여 객 업 종	소계	62,074	23,976	8,351	573	29,174(34.1%)
	버스	21,910	15,360	3,362	91	3,097 (14.1%)
	법인택시	12,005	1,081	2,110	293	8,521 (71%)
	개인택시	13,609	667	283	6	12,653 (93%)
	전세버스	9,192	4,300	1,798	85	3,009 (32.7%)
	마을버스	4,028	2,079	660	98	1,19 (29.6%)
	고속버스	1,330	489	138		703 (52.9%)
화 물 업 종	소계	74,968	35,597	3,281	1,206	34,884 (46.5%)
	법인화물	32,980	13,768	1,439	1,114	16,659 (50.5%)
	용달화물	27,734	11,540	1,037	38	15,119 (54.5%)
	개별화물	14,254	10,289	805	54	3,106 (21.8%)

※ 시.군조합/협회 인원은 포함하지 않음

□ 2020년도 화물업종 온라인보수교육 일정

2020. 9. 2. 현재

교육일자	접수인원 / 정원	교육시간
9월 6일 ~ 9월 8일	711 / 2300	4시간
9월10일 ~ 9월12일	170 / 2300	4시간
9월13일 ~ 9월15일	155 / 2300	4시간
9월17일 ~ 9월19일	61 / 2300	4시간
9월20일 ~ 9월22일	80 / 2300	4시간
9월24일 ~ 9월26일	46 / 2300	4시간
9월27일 ~ 9월29일	74 / 2300	4시간
10월 4일 ~ 10월 6일	57 / 2300	4시간
10월 8일 ~ 10월10일	71 / 2300	4시간
10월11일 ~ 10월13일	30 / 2300	4시간
10월15일 ~ 10월17일	39 / 2300	4시간
10월18일 ~ 10월20일	40 / 2300	4시간
10월22일 ~ 10월24일	60 / 2300	4시간

운수종사자 보수교육(온라인)
LMS 사용설명서
- 화물 교육생용 (PC) -

교육명 : 운수종사자 보수교육
교육대상 : 경기도 운수종사자
교육기간 : 3일
교육시간 : 4시간 (강의 시간)
소요시간 : 4시간 ~ 5시간 (본인인증 등)
수료기준 : 학습진도율 100%

※ 목차
1. APP설치하기
2. 회원가입하기
3. 교육예약하기
4. 학습시작하기
5. 본인인증하기
6. 학습하기
7. 수료확인

학습장애 상담 : 1644-5865
기타 교육 문의 : 031-251-6191



경기도교통연수원

1. 교육찾아가기

① WWW.NAVER.COM 접속하기



② 검색창에 “경기도교통연수원” 입력



③ “경기도교통연수원” 홈페이지 접속



④ “온라인교육장” 이동 클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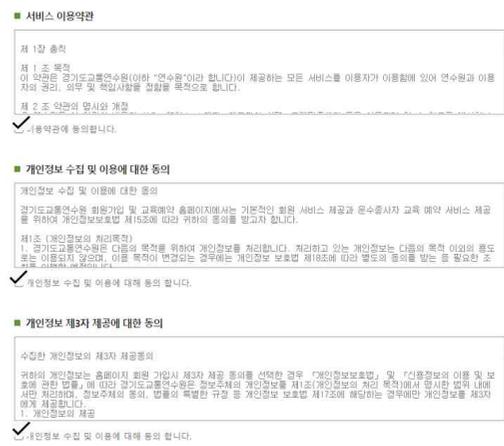


2. 회원 가입하기

① 온라인교육장 이동 후 회원가입 클릭



② 약관 내용 충분히 숙지 후 항목에
✓ 체크 “약관동의 후 정보입력” 클릭



③ 개인정보 확인



④ 회원정보 입력



⑤ 차량정보 입력



⑤-1 회사명 검색 방법



3. 교육예약하기

① 로그인하기



② 로그인 후 교육신청(예약)하기



③ 원하는 교육 일정으로 선택

과정명	입수원생/생원	기간	과정시간	학습하기
8월27일~8월29일 / 화물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/ 32기	703/2300	3일	4시간	예약신청 >
8월30일~9월1일 / 화물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/ 39기	486/2300	3일	4시간	예약신청 >
9월5일~9월5일 / 화물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/ 41기	183/2300	3일	4시간	예약신청 >
9월5일~9월5일 / 화물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/ 43기	188/2300	3일	4시간	예약신청 >
9월10일~9월12일 / 화물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/ 45기	70/2300	3일	4시간	예약신청 >
9월13일~9월15일 / 화물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/ 47기	82/2300	3일	4시간	예약신청 >

④ 예약 신청 완료

신 청 기 간 2020년 06월 10일 (수) - 2020년 09월 01일 (화)
 교 육 기 간 2020-09-03 (목) - 2020-09-05 (토) 3일
 과 정 시 간 4시간
 수 료 기 준 전도를 100% 이상 / 총점 100점 이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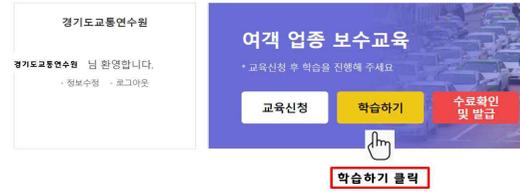
평가비율	전도를	진행단계평가	최종평가	과제물	수료점수
100%	0%	0%	0%		100점 이상

예약신청 > | 프린트

예약신청 클릭

4. 학습시작하기

① 학습시작하기 1



② 학습시작하기 2



③ 유의사항 내용 충분히 숙지, 표시 후 동의 클릭

수강 기간은 교육 당일부터 3일(72시간) 내 수강

- 기간 내 미수 시 재 예약 후 수강(예약 일정이 마감(교육 및 예약 종료)된 경우 불가)
- 타사도 차량(서울, 인천, 부산 등) 운수종사자는 신청(수강)이 불가 합니다.
- 허위(경기도 운수종사자로 허위 기재) 예약 후 수강 된 건에 대해 사전 동의 없이 삭제됨을 알려 드립니다.
- 운행 중 수강 불가(문제 발생 시 본인 책임)
- 모바일 학습 시 와이파이가 아닌 데이터를 이용할 경우 비용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.
- 3일(72시간) 내 수강을 완료 하지 않을 경우 패널티가 적용되어 교육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. (교육신청 가능 횟수 : 총 3회)
- 상기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.

취소 | 동의 < 동의 클릭

④ 학습시작하기 3



5. 본인인증하기

① 본인인증 시작하기



② 핸드폰 인증 (가장 빠르고 간편)



③ 인증번호 입력하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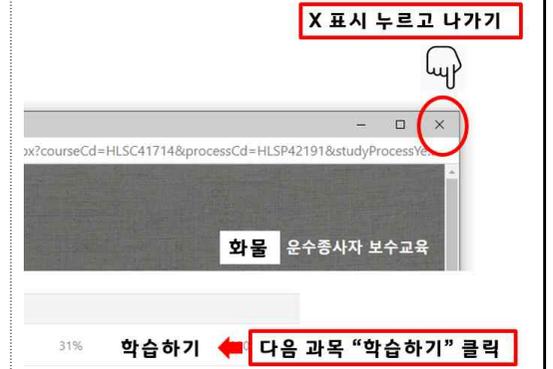


6. 학습하기

① 다음 장 넘어가는 방법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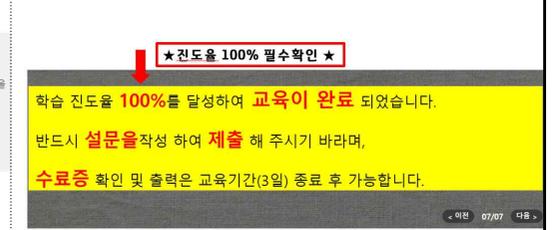
② 다음 과목 넘어가는 방법



③ 다음 과목 넘어가는 방법 2



④ 모든 과목을 수강했을 시 보이는 화면



7. 수료확인

★「수료확정」 및 「수료증」 확인은 학습마감일 익일 오전 9시부터 가능합니다.

★「수료증」 확인은 【나의강의실→교육현황→복습가능 교육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운수종사자 보수교육 (온라인)
LMS 사용설명서
- 화물 교육생용 (모바일) -

교육명 : 운수종사자 보수교육
교육대상 : 경기도 운수종사자
교육기간 : 3일
교육시간 : 4시간 (강의 시간)
소요시간 : 4시간 ~ 5시간 (본인인증 등)
수료기준 : 학습진도율 100%

※ 목차

1. APP설치하기
2. 회원가입하기
3. 교육예약하기
4. 학습시작하기
5. 본인인증하기
6. 학습하기
7. 수료확인

학습장애 상담 : 1644-5865
기타 교육 문의 : 031-251-6191



경기도교통연수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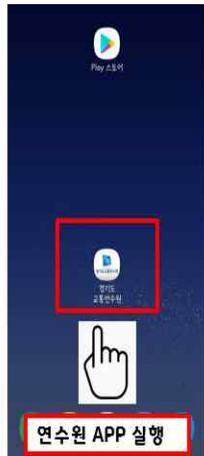
1. APP 설치하기

① PLAY 스토어 실행

①-1 실행 후 경기도교통연수원 검색 및 설치



② 연수원 어플 실행



2. 회원가입하기

① APP 실행 후 회원가입 시작하기

② 약관 내용 충분히 숙지 후 항목에
✓ 체크 “약관동의 후 정보입력” 클릭



③ 개인정보 확인



④ 회원정보 입력



⑤ 차량정보 입력



⑤ 차량정보 입력 2



3. 교육예약하기

① 로그인 하기



② 로그인 후 교육예약 하기



③ 원하는 교육일정으로 선택



④ 예약신청 완료



4. 학습시작하기

① 학습시작하기 1



② 학습시작하기 2



③ 유의사항 내용 충분히 숙지,

✓ 표시 후 동의 클릭

- 수강 기간은 교육 당일부터 3일(72시간) 내 수강
- ✓ 기간 내 미 이수 시 재 예약 후 수강(예약 일정 이 마감(교육 및 예약 종료)된 경우 불가)
 - 타시도 차량(서울, 인천, 부산 등) 운수종사자는 신청(수강)이 불가 합니다.
 - ✓ 허위(경기도 운수종사자로 허위 기재) 예약 후 수강 된 견에 대해 사전 동의 없이 삭제됨을 알려 드립니다.
 - ✓ 운행 중 수강 불가(문제 발생 시 본인 책임)
 - ✓ 모바일 학습 시 와이파이가 아닌 데이터를 이용할 경우 비용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.
 - ✓ 3일(72시간) 내 수강을 완료 하지 않을 경우 패널티가 적용되어 교육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. (교육신청 가능 횟수 : 총 3회)
 - ✓ 상기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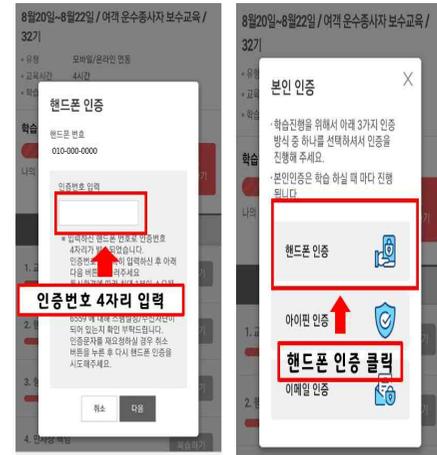


④ 학습시작하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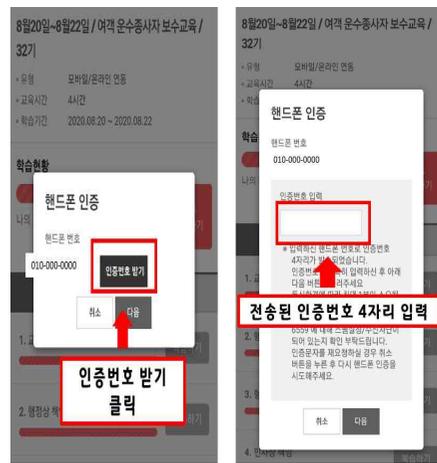


5. 본인인증하기

① 핸드폰 인증(가장 빠르고 간편)



② 인증번호 입력하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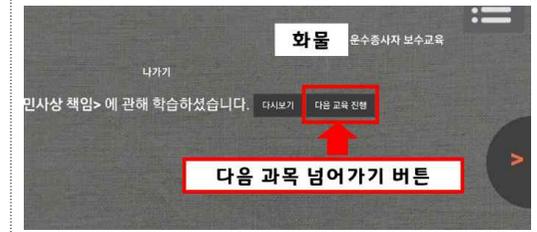


6. 학습하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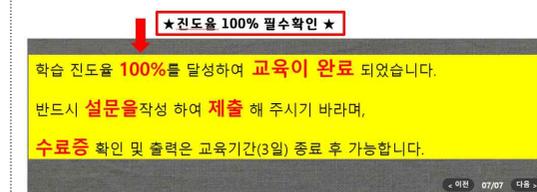
① 다음 장 넘어가는 방법



② 다음 과목 넘어가는 방법



③ 모든 과목을 수강했을 시 보이는 화면



7. 수료확인

★「수료확정」 및 「수료증」 확인은
학습마감일 익일 오전 9시부터 가능합니다.

★「수료증」 확인은
【나의강의실→교육현황→복습가능 교육】을 통해
확인할 수 있습니다.

운수종사자(보수)교육 관련 행정처분

○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

[별표 1]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(제5조제1항 관련)

<개정 2018. 11. 27.> [시행일: 2019. 1. 1.] 제2호의 제10호서목

2. 개별기준

위 반 행 위	근 거 법 조 문	처 분 기 준
10. 법 제11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서. 법 제11조제22항을 위반하여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가 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, 그 교육을 받지 않은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종사하게 한 경우	법 제19조제1항제7호	○사업 일부정지(10일)

[별표 2]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(제7조 관련)

<개정 2018. 11. 27.> [시행일: 2019. 1. 1.] 제2호의 제3호머목, 제2호의 제17호차목, 제2호 비고 제1호

2. 개별기준

위 반 행 위	근 거 법 조 문	과 징 금 의 금 액
3. 법 제11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머. 법 제11조제22항을 위반하여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가 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, 그 교육을 받지 않은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종사하게 한 경우	법 제19조제1항제7호	30만원

※ 비고

- 위 표 제3호머목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정한다.
(위 표에서 정한 과징금의 금액 ×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운수종사자 수)

[별표 5] 과태료의 부과기준(제16조 관련)

<개정 2018. 11. 27.>

2. 개별기준

위 반 행 위	근 거 법 조 문	과 태 료 금 액
아. 운수사업자가 법 제11조(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은 제외하며, 법 제28조 및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	법 제70조제2항제5호	50만원
보. 운수종사자가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	법 제70조제2항제23호의3	50만원